

의안번호	2220315
의 퇴 인	이주희의원
회 답 일	2026.10.7.
추 계 번호	26D3842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(조사)	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1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(직접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)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(제1항)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의 조사를 1회(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서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한 조사를 횡수에 포함한다) 이상 하여야 함. 다만, 현장조사가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2항)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,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(이하 “필수조사대상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(제4항) 1. 해당 신고를 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2. 피해아동의 보육·진료·교육 등에 관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. 다만, 피신고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제8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(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거나 수사기관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고, 조사를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는 재량사항이며, 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은 재량사항이던 조사를 의무화하고, 조사 개시 및 완료 기한을 명시함
-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,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증원이 필요한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¹⁾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

1) 제22조(정원책정의 일반기준)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,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2.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·난이도·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

3. ~ 6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④ ~ ⑤ (생략)

처하여야 함

- 또한,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수, 업무량 등에 따라 증원 수요가 달라질 수 있는바, 이를 예측하기 어려움
- 참고로 2025년 6월 기준 전국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총 892명이며, 최근 5개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1]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 건수: 2021~2025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
전체 신고 건수	42,251	53,932	46,103	48,522	50,242
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¹⁾	38,929	52,083	44,531	45,771	47,096
아동학대 판단 건수 ²⁾	30,905	37,605	27,971	25,739	24,492

주 1)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: 아동학대 신고 건 중 동일 건 신고 등으로 바로 종결 처리한 건을 제외하고, 실제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한 건수

2) 아동학대 판단 건수 :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지방정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건수

자료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
-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박은비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은비	02-6788-4831	ebpark@assembly.go.kr